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00호
2. 발 의 자 : 김선갑 의원
3. 발의일자 : 2017. 10. 31.
4. 회부일자 : 2017. 11. 1.

## II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사고·폭력·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안전교육 수행 시 실습교육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효성과 운영에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교육 수행 시 생활안전교육, 각종 폭력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11조제2항 각 호).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조례안 [별첨] 참고)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참고]
  - 입법예고(2017. 11. 6. ~ 11. 13.)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31일 김선갑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00호로 발의되어 2017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이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범위를 생활안전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 예방교육과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교육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와 동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이라 하겠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기준<sup>1)</sup>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 안전교육	교통 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 안전교육	직업 안전교육	응급 처치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표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교육 실시 현황(2016~2017 상반기)

(단위: 수업 차시)

시기	학교급	안전교육 7대 영역(차시)							합계
		생활 안전	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	약물/ 사이버	재난 안전	직업 안전	응급 처치	
2016	유치원	18.66	15.58	14.89	13.06	13.24	2.95	4.00	82.38
	초등학교	21.07	16.45	20.25	12.24	10.02	4.19	5.93	90.14
	중학교	14.47	11.27	19.65	11.12	9.65	5.33	5.80	77.29
	고등학교	12.67	11.25	16.30	9.90	8.79	4.80	4.74	68.45
	특수학교	13.24	12.35	18.08	9.37	9.36	6.88	4.01	73.29
	전체평균	16.02	13.38	17.83	11.14	10.21	4.83	4.90	78.31
2017 상반기	유치원	8.92	7.23	6.73	5.69	6.60	1.43	1.73	38.61
	초등학교	8.65	7.32	7.84	5.58	3.98	1.48	1.98	36.83
	중학교	6.83	5.77	7.95	4.85	3.99	2.29	2.25	33.89
	고등학교	6.13	5.02	7.21	4.56	3.55	2.16	1.83	30.46
	특수학교	12.83	8.17	11.36	4.94	4.13	3.84	2.43	47.70
	전체평균	8.67	6.70	8.22	5.13	4.45	2.24	2.05	37.50

- 2016년 이수율 : [78.31차시/51차시]×100 = 153.4%

- 2017년 상반기까지 이수율 : [37.50차시/51차시]×100 = 73.52%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47호, 2016.2.3., 일부개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1.20.>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7.21>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